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17. 1.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.>

## 건축물지번 [ ]변경 [ ]정정 신청서

\*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	
(변경 · 정정) 전		(변경 · 정정) 후			변동구분
대지위치	지번	비고	대지위치	지번	비고
					변동일
					변동원인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

[ ]변경 [ ]정정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신청의 경우 가. 현황측량성과도(「측량 ·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나.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(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) 2.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(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, 「측량 ·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확인사항	1. 변경신청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. 정정신청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	